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지난 9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올해 1월부터 12월 초까지 (i) 재난 피해 관련 대출원금 감면 등 금융지원 명령권 도입, (ii)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iii) 금융교육 강화, (iv)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 분장, (v) 금융상품 방문·전화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내용으로 총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지속될 것이므로, 올바른 개선방향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보험업권에서는 개정안이 영업현장이나 민원처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9월 경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듯 법 시행 전부터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¹⁾
 - 법 제정 직후인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사후적 구제장치와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임
 - 예를 들어, 사후적 피해구제제도 관련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편의적 구속력 등의 도입이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임²⁾
-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금융지원 등 명령권과 금융교육 강화 등 보다 다양한 쟁점에 대해 총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됨³⁾
 - 이하에서는 올해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금융위원회가 재난 등⁴⁾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금융회사에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민형배 의원안, 제2107852호)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1. 12. 6. 현재 총 12건

2) 양승현(2020),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보험법리뷰』, 제7호

3) 2021. 12. 6. 기준

4)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 재난 발생 및 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으로 인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및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의 경우를 말함

- 금융위원회 명령으로 금융회사에 재난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거나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재난 등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금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개인 연체채무자 지원 등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타 법령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⁵⁾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조정위원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됨(김병욱 의원안, 제2108531호)
-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조정위원을 지명·위촉하고 조정위원회 의사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제안함
 - (규칙 제·개정권)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조정위원회 구성) (i) 위원 정수를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ii) 법무부, 한국소비자원, 금융 관련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iii)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 회의)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조정 대상기관(금융회사 등)과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조정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
 - (당사자 의견진술권)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명시함
 - 금융감독당국은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규칙 제·개정권은 금융감독원에 조정위원회를 둔 현 제도상 입법 의도 달성에 한계가 있다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⁶⁾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임기 연장에 대해서도 부패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 금융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금융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교육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윤창현 의원안, 제2109136호)
-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금융교육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 (금융교육의 정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관리 등 금융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금융사기·사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도입함
 - (금융교육기본계획 등 수립·추진·평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평가하고 금융교육협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교육과정 반영) 금융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월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금융교육협의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5) 이용준(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p. 15 참조

6) 이용준(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p. 15 참조

7) 이용준(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p. 15 참조

격상하며,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함

- 금융위원회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금융교육 법제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책 수립과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횟수 및 의장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금융교육 의무화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⁸⁾
 - 한편, 교육부는 월 1회 이상 금융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⁹⁾

○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금소법을 위반한 경우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경징계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윤창현 의원안, 제2112784호)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나, 현행 금소법은 일부 업권¹⁰⁾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종류 및 제재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제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기관경고 이하, 그 임원은 문책경고 이하, 직원은 모든 제재¹¹⁾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반면, 은행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도 금감원장에게 위탁되고,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만이 조치요구권을 가짐
- 개정안은 이처럼 상이하게 규정된 제재처분 권한을 일관되게 통일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감봉 이상의 중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¹²⁾을 제안하고 있음
 - 직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익적 처분인 중징계까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업권별로 제재 권한의 행사를 다르게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임

○ 방문·전화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김희곤 의원안, 제2113327호)

- 금소법의 시행과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의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¹³⁾에 따라 방문판매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등)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방문과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인 점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법제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 목적 연락 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평온한 일상 보호)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금융상

8) 이용준(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 개선·보완)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pp. 12~13, pp. 17~18 각 참조

9) 이용준(20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 개선·보완)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p. 13 참조

10)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경영 여신업자를 말함

11) 직원의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해 조치를 요구함

12) 기관주의, 임원은 주의적 경고 이하, 직원은 견책 이하에 대하여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13) 방문판매법 제정 당시부터 보험상품은 적용 제외 대상이었음

품 소개 및 권유 목적의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됨

- (전속관할)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 (기타)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는 특약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함

○ 금소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보완·합리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법 제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제반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가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금소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 내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심도 깊은 검토를 토대로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올바른 개선방향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보험업권의 경우는 개별 개정안이 판매현장이나 민원처리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방문판매법 관련 개정안의 경우, 보험상품의 판매는 대부분 방문판매임을 전제로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엄격한 규제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추가되는 규제 불합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1〉 금소법 개정안 목록

번호	의안번호	의안명(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1	210785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2021. 2. 2	재난 피해 관련 금융지원 등 명령권 신설	소관위심사
2	210853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2021. 3. 4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소관위심사
3	210913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2021. 3. 25	금융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금융교육 강화	소관위심사
4	211278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2021. 10. 5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징계 권한 분장 개선	소관위접수
5	211332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2021. 11. 16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소관위접수